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0.

발 의 자 : 임미애 · 이광희 · 김태선
백승아 · 김정호 · 정준호
문대림 · 이기현 · 이연희
임호선 · 박정현 · 이재강
박민규 · 최혁진 · 윤후덕
이수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, 이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촌으로서, 읍·면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·군·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자치구는 배제하고 있음. 이로 인해 읍·면을 포함한 시·군·특별자치시와 동만 포함하는 시 등 총 160개의 시·군·특별자치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,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는 이 법에 따른 연계지원 및 특례적용 등에서 제외되어,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

집단화,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환경·생태 보호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,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3조 등).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이하 같다) 또는”을 “이하 같다), 자치구(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또는”을 “, 구청장(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시·군”을 “시·군·구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또는 군수는”을 “,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시장 또는 군수는”을 “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시장·군수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군별”을 “시·군·구별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전단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본문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본문 중 “시·군”을 “시·군·구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

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·군수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장·군수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시장·군수가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이”로 한다.

제36조제2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37조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“시장·군수 또는”을 각각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시장·군수에게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·군수의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의”로 한다.

제43조제2항 단서 중 “시장·군수 등은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”이란 시·군(광역시 의 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<u>이 하 같다</u>) 또는 특별자치시 소 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 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 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.	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하 같다</u>), 자치구(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. <u>이하 같다</u>) <u>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8. “계획수립권자”란 시장·군 수(광역시의 군수와 「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	8. ----- ----- ----- -----

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.

9. ~ 17. (생략)

제3조(정부 등의 책무) ① . ② (생략)

③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·군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·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.

제9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) ① . ② (생략)

③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-----, 구청장(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
-----.

9. ~ 17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정부 등의 책무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시·군·구-----

-----.

제9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,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) ① · ②
(생략)

③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제13조(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)

①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·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·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5조(주민제안) ① 주민(이해관

제11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) ① · 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시장, 군수·구청장 또는 구청장은-----
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)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시·군·구별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주민제안) ① -----

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 특화지구의 지정을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 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6조(농촌협약의 체결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17조(농촌협약의 신청) ①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장

-----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-----.
-----.

② -----
-----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농촌협약의 체결 등) ① -----
-----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농촌협약의 신청) ① -----
-----시장

·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
기본계획, 시행계획, 농림축산
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
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
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2조(주민협정의 체결) ① ·

② (생략)

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회의
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
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 또
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
아야 한다.

④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
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
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
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
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23조(주민협의회) ① · ② (생
략)

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
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
며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

· 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주민협정의 체결) ① 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시장·군수·구청
장 또는-----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---

⑤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주민협의회) ① · ② (현
행과 같음)

③ -----

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
·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
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제25조(주민협정의 이행 지원) ①
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장·군
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
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
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
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장·
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
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
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
있다.

③ (생략)

제26조(사업시행자) ① 시장·군
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
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
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
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
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

-----시장·
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주민협정의 이행 지원) ①
-----시장·군
수·구청장 또는-----

-----.

② -----시장
·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사업시행자) ① 시장·군
수·구청장 또는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--

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
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
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
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
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④ (생략)

제28조(사업계획의 승인) ① 사업
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
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
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
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하다.

②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
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
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
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
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
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
야 한다. 이 경우 협의 요청을
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사업계획의 승인) ① ----

-----시장·군수·
구청장 또는-----
-----.

-----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--

-----.

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.

③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1조(다른 법률의 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(생략)

②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33조(광역·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(이

-----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
-----.

제31조(다른 법률의 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광역·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) ① -----

시 · 군 · 구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지원조직) ① -----
-----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또는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--

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
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
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
조직을 둘 수 있다.

1. ~ 9. (생 략)

④ (생 략)

제35조(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) ①

· ② (생 략)

③ 시장·군수는 다음 각 호의
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
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
관(이하 “기초지원기관”이라 한
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1. ~ 8. (생 략)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
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제1항부
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
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(이하
“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의 업무
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
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
지사 및 시장·군수가 지정한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시장·군수·구청장은

-----.

⑤ -----
-----시장·군수·구청장이

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⑥ (생략)

제36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) ① (생략)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· ④ (생략)

제37조(보고 및 검사 등)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 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
-----.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보고 및 검사 등)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
-----.

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38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·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기본방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.

-----.

제38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·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) ① -----
-----시
장·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시장·
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
-----시장
·군수·구청장 또는-----

-----.

제40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

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시장·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43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)

① (생략)

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「지방세특별제한법」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,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·군수

제40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

-----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-----.

② -----

-----시장·군수·구청장의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시장·군수

<u>등은</u> 취득세,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<u>· 구청장 등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